

#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9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2일

발 의 자 : 김경, 채인묵 의원(2명)

찬 성 자 : 임종국, 김제리, 문장길, 양민규,  
김정태, 김상진, 김혜련, 정재웅,  
경만선, 최기찬, 고병국, 문병훈,  
서윤기, 김달호, 채유미 의원 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,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이에 발맞춰 시민의 창의적 역량 향상과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선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
-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각종 상표 출원,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며,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 역시 미비한 실정임
- 이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 일반에 널리 알리고, 시민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, 상표,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, 전문인력 양성,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
다. 지식재산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, 각종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지식재산에 관한 대시민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식재산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,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식재산”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,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

2.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교육의 전략
3.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3.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
4.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
5.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
2. 지식재산 교육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
3. 지식재산 교육 사업
4.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관계 구축)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

여 특허청, 저작권보호위원회,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  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7조(재정지원) 및 제8조(홍보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  - ※ 제6조(지원사업 등)는 서울지식재산센터(SBA 위탁)를 통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기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  - 2020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
    - 지원대상 : 서울시민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 임직원
    - 지원규모 : 30회 700명
    - 예산액 : 30백만원(강사비 15백만원, 교재비 및 부대비용 15백만원)
    - 교육내용 :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발명아이디어 발상, 권리화, 기술보호 방법과 사례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= 425,000천원(연평균 85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85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- 안 제7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1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비용 전부를 지원하되, 연간 지원규모는 2020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예산을 준용하여 30백만원으로 전제
  - 안 제8조 전시회 및 행사는 연 1회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 = 425,000천원(연평균 85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재정지원 (제7조)	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
	전시회 및 행사 (제8조)		55,000	55,000	55,000	55,000	55,000	275,000
	소계(b)		85,000	85,000	85,000	85,000	85,000	425,000
□ 총 비용(b-a)			85,000	85,000	85,000	85,000	85,000	425,000

○ 재정지원 : 연간 비용 30,000천원 × 1개 기관 또는 단체 × 5년 = 150,000천원

- 연간 비용 : 2020년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예산 30,000천원 적용

○ 전시회 및 행사 : 연간 비용 55,000천원 × 5년 = 275,000천원

- 연간 비용 : 2020년 ‘서울 브랜드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’ 예산 55,000천원(공모전 운영 45,000천원+전시회 개최 10,000천원) 적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조사분석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